관리년도 2019년 1월~12월

결재	담당자	관리자

우리기관

운영규정

개요

다솜요양복지센터

1.개요총괄

운영목적	본 기관은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우리기관 운영규정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참조
이용료 및 비용부담	우리기관 운영규정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참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우리기관 운영규정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참조
이용료 산정방식	우리기관 운영규정 제3-1조 (서비스 이용료 산정 방식) 참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우리기관 운영규정 제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규정) 참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우리기관 운영규정 제6조 (운영규정 개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우리기관 운영규정 제7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참조
기타	자세한 운영규정은 첨부된 우리기관 운영규정을 참조하세요

2.총칙

가. 기관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관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나. 기관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등)
(2) 이용자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채용,복무,승진,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 (임금,퇴직금,상여금 등)
(9) 직원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복지,포상,휴가 등)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 건강검진 등)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3.기본정보 및 연혁

기관명	다솜요양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번호				**3-2726000176**			
대표자	김민자				기관장				김민자			
지정/신고일자	2011년09월01일 / 2011년08월31일				지정형태				■방문요양 ■방문목욕			
인력현황	관리책임자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1급	요양보호사 2급	사무원	기타
54	1	1							52			
기관연락처	**010-8550-0026**				이메일				**creation99@hanmail.net**			
팩스번호	**053-746-0990**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사이트 블로그			
사업장주소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5**											
주차시설	건물옆 골목주차 또는 수성구청...				교통편				2호선 범어역에서 내려서 도보로2분 (수성구청 맞은편)			
사업지역	대구광역시 전지역 및 인근지역											
영업일 (영업시간)	평 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 까지							
	토요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16시 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휴 일							
	-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18시까지 한다. -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4.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15%)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7.5%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금액(원)							
	30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4,120	21,690	29,080	36,720	41,730	46,130	50,190	53,94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5.전문인배상책임 가입현황

보험회사명		가입상품명		보험가입일	

6.프로그램 운영현황

	종류	제목	대상(명)	주기(시간)	장소
프로그램 운영 사항					

7.급여비용 가산지급현황

급여비용가산 지급기관	■예 □아니오
급여비용가산 지급기관(공대 동의여부)	■예 □아니오